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41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김교홍 · 윤준병 · 장철민
문진석 · 이훈기 · 허종식
정일영 · 이재관 · 노종면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 · 포항 · 울산 · 광양 · 여수 · 서산 ·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63조의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4(산업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한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

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3조의4(산업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u>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한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